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정 비교표 20230615

번호		개정전	개정후	비고
1	전문	<p>(2) 신용거래정보 -은행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p> <p>(1)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7) 개인신용정보 자동화평가 시행여부 설명요구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은행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2.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은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1)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1) 개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7) 개인신용정보 자동화평가 시행여부 설명요구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당행에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2.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당행 영업점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당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해당 신규 전체적으로 "당행"이라는 용어는 전문에만 나오고 본문에서는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적절히 통일</p>
2	제1조 제1항 제2호	<p>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2)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p>	<p>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2)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p>	<p>개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p>
3	제1조 제2항 제1호	<p>(1) 식별정보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p>	<p>(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p>	<p>"성명" 앞에 "개인의" 문구를 추가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2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p>
4	제1조 제2항 제2호	<p>(2) 신용거래정보 -은행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p>	<p>(2) 신용거래정보 -은행에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대출, 보증, 담보제공, (가계)당좌거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p>	<p>"신용거래정보"의 정의에 관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3을 참조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p>
5	제1조 제2항 제3호	<p>(3) 신용도판단정보 -명의 도용, 보험사기,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p>	<p>(3) 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 명의 도용, 보험사기,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p>	<p>"신용도판단정보"의 정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 가목의 사항 추가</p>

6	제2조 제1항		<p>(1)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관련 공개의 형식 변경
7	제3조 제1항 제2호		<p>(2)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법 제38조의3의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청구권관련 내용 추가
8	제3조 제1항 제3호	<p>(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4)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각 영업점 에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p>	법 제35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안내 추가
9	제3조 제1항		<p>(8)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법 제36조는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의 내용추가
10	제3조 제1항		<p>(9)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5호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권 관련 내용 추가